

해소되지 않은 의혹 속의 통신심의규정 개정 반대한다!!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운수노조지부와 언론노조지부는 이미 성명서를 통해 밀어붙이기식 심의규정 개정에 대해 반대했다. 우리는 개정의 이유와 근거가 빈약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하는 심의규정 개정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확고히 밝힌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심의규정의 명예훼손심의가 상위법인 정통망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서 비롯된 심의규정 개정논의가 여전히 '개정'이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가? 정통망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이라는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들간 이견이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작년 1월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심의접수를 친고 형태로 하여 형법의 명예훼손 공소제기요건인 반의사불벌 형태보다 좁혀놓았다. 벗어나도록이 아니라 더 넉넉히 속하게 만든 것이다.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는 우리 위원회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했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심스러웠으며 겸손했다.

우리는 영혼없는 심의꾼이 되기를 거부한다.

위원장은 이미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기관, 공인 등에 대한 심의를 최소화하여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고 하였다.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내부 지침 또는 전체회의 의결로 정부 및 공인에 대한 심의개시는 사법부 판단을 전제로 하는 등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고 해도, 여전히 개정이유인 상위법과 '맞는 옷'이 아니다. 아니, 이제는 개정 심의규정과도 맞지 않게된다. 합의제 정신을 지켜가는 제3기 위원회를 신뢰하고 싶지만 현 위원들이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으며, 모순적 법규체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일 이대로 개정된다면, 직원들의 힘과 열정이 부정한 돈과 권력에 대한 자유시민의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키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위하여 적어도 돈과 권력에 우선하며, 우리 위원회 직원은 자랑스러운 조직문화를 이어가기 원함을 밝힌다.

위원회는 규정개정 토론회를 비롯한 의견들을 절차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의혹이 없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방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2015. 8. 17.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